

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·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

(관세청 조사총괄과 042-481-7952)

관세청고시 제2016-10호(2016. 2. 5.)

관세청고시 제2018-13호(2018. 5. 2.)

관세청고시 제2020-13호(2020. 4. 1.)

관세청고시 제2023-00호(2023. 0. 0.)

관세법 제3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제2항·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법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- 아 래 -

1. 가중·감경 기준

구분	사 유	비율
가중	세관의 소환조사 등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세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	+10%
	압수수색 및 신변수색시 증거물을 은닉·인멸·훼손한 자	+20%
	정당한 사유 없이 임검수색에 불응·도주하거나 공범의 도피를 방조한 자	+15%
	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¹⁾	+30%
	「관세법」 제268조의2,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, 제274조, 제275조의2, 제275조의 3, 제275조의 4,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,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, 제62조 및 제65조,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(통고처분 면제의 경우는 처분 면제일,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의 선고일) 2년 이내에 다시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	
	2범	+30%
3범 이상	+50%	

감경	범칙조사 중(해당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또는 고발 전까지)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족세액(가산세를 포함한다)을 자진 납부한 자. 다만, 부족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전체 금액 중 자진 납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경한다.	-50%
	심신미약자, 청각 및 언어 장애인, 「관세법」 제269조·제270조·제274조의 범죄를 예비한 자	-50%
	「관세법」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 업체	
	AAA등급업체 ²⁾	-50%
	AA등급업체	-30%
	A등급업체	-15%
	「관세법」 제38조제3항,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	-15%
	세관의 조사개시 전에 자수한 자	-50%
	세관의 소환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조사개시부터 종료시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(다만, 다른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)	-15%
	수출업자(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수출을 포함한다)	
	전년도 ³⁾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	-30%
	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	-20%
	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	-10%
	제조업자(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임이 명시된 자로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)	-20%
	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	
	법규준수도 ⁴⁾ 95점 이상	-50%
	법규준수도 90점 이상 95점 미만	-30%
	법규준수도 80점 이상 90점 미만	-15%
장애인 고용 우수기업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)	-20%	
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(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기업)	-20%	
감염병, 지진, 화재 등 재난사태로 인해 재난 발생 이후의 수출 혹은 수입실적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20% 이상 감소한 기업(다만, 재난의 발생·치료·복구 기간 중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한한다)	-20%	
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자 등을 제보하거나 타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보한 자	-10%	

	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	
	2회 이상	-15%
	1회	-10%
사회적 약자 ⁵⁾ 로 인정되는 자		-15%

- 1) 「관세사법」 제7조에 따른 관세사,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,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, 「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」 제2조에 따른 직무보조자, 「관세법」 제135조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는 선장·기장,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출항허가를 받는 선장·기장,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선장·기장의 직무 대행자, 같은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·화물관리인·보세사, 같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, 같은 법 제225조에 따른 선박회사·항공사(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) 및 법령에 따른 허가·신고·등록 없이 이상 나열한 자의 업무를 행한 자
- 2)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5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한 등급으로, 위반 행위일의 등급
- 3) 통고처분일이 해당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
- 4) 「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평가점으로 위반 행위일이 속한 분기의 평가점수. 단,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대상 신고건수가 없어 위반 행위일이 속한 분기에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.
- 5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,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

2.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,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

할 수 있다.

3. 세관장은 가중·경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
4. 재검토기한: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<관세청고시 제2016-10호(2016. 2. 5.)>

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관세청고시 제2018-13호(2018. 5. 2.)>

이 고시는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관세청고시 제2020-13호(2020. 4. 1.)>

이 고시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관세청고시 제2023-00호(2023. 0. 00.)>

이 고시는 2023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